

1.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범위는 방송,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국한(제2조 제1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란 무엇인가, 보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언론이나 보도 장르를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방송법에는 보도를 할 수 있는 사업자와 보도를 할 수 없는 사업자를 구분하고 종편(지상파, 종편채널), 보도전문채널 외에는 보도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경제TV, CBS와 같은 라디오방송은 유사보도라 하여 규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도 장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JTBC <썰전>이 오락인가 시사인가 구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인포테인먼트 등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는 장르가 융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장르 구분의 의미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영향력 면에서도 장르 구분의 의미가 있을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tvN의 <여의도 텔레토비>, MBC의 <무릎팍도사>의 정치적 영향력이 뉴스보다도 클 수 있습니다. 미국의 <MTV 뉴스>도 2004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젊은 유권자에게 정치 교육 채널이 된 바 있습니다. 오락의 정치화, 정치의 오락화 속에서 보도보다 오락 프로그램이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르 구분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에서도 협소한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미디어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라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관간 업무중복을 이유로 언론중재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부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언론중재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내용을 사후에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언론중재위원

회는 권리침해에 있어 당사자간의 다툼과 분쟁을 조정 및 중재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있어 정부나 여당 편향적이어서 독립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규제기관에 의한 임시조치 등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언론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아닌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개인의 권리보호와 언론 자유의 조화를 꾀한다는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이 일부 있지만 조직이나 규모 측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사생활, 초상권 등 권리침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서 언론중재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률개정 방향으로 인터넷에서의 피해구제 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대상에 예능 프로그램도 포함된다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KBS <승승장구>,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 아이돌그룹의 한 멤버의 발언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언론의 의무가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 FCC가 그 동안 뉴스 장르를 폭넓게 적용해온 것도 뉴스이건 오락이건 방송사업자에게 사실을 은폐·허위·왜곡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르구분이나 언론이냐 아니냐 형식을 떠나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도, 언론이라는 개념에 국한하기보다는 미디어에 의한 권리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서도 범위를 출판물에만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로 확대 적용하는 것처럼 앞으로 언론중재법도 ‘언론’, ‘보도’ 개념에 국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디어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을 ‘공연성’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도, 언론보다는 미디어에 의한 권리침해인지 여부를 ‘공연성’ 여부로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인터넷공간의 경우 ①‘이메일/메신저’ ②‘게시판, 토론방, 카페, 블로그 등의 공개광장’ ③‘인터넷 언론’ ④‘인터넷 홈페이지나 SNS’로 구분하고 ②③만 언론중재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미 1인 미디어 시대에 접어든 지금, 언론사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정보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시판보다 영향력 있는 트위터에 의한 권리침해가 더 심각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가능한지 등 공연성 기준으로 판단하여 권리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향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의 권리침해 양상이 심화되고 다양화될 것을 예상한다면 오히려 심각한 권리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인터넷에서의 피해 구제 방법이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